

LNG 도입계약의 법적 분석*

Legal Analysis of LNG Sale & Purchase Agreement

류 권 홍**
Ryu, Kwon-Hong

목 차

- I. 머리말
- II. LNG 도입계약의 개념과 특징
- III. LNG 도입계약의 주요 내용과 절차
- IV. LNG 도입계약의 내용 검토
- V. 맺음말

국문초록

우리나라는 1차 에너지원의 97%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해오고 있으며, 2010년 기준으로 천연가스가 1차 에너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6.4%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LNG 매매계약의 성질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LNG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의 규모, 20년 이상의 장기계약기간 뿐만 아니라 독특한 금융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프로젝트의 전체적 구조가 금융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현실이다.

LNG 매매계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탐사, 생산, 수송, 판매를 포함하는

논문접수일 : 2012.06.25

심사완료일 : 2012.07.25

제재확정일 : 2012.08.02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됨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변호사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있어야 함을 물론, 국제법과 국제거래법에 대한 지식도 요구된다. 그리고 LNG 매매계약에 대한 이해는 상거래로서의 성격과 함께 정치적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필요하다.

화석연료는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의 배출로 인한 환경문제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또는 원자력에너지의 개발을 촉진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커다란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에너지원의 97% 이상을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원자력정책을 당장 포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의 한계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넓어지고, 신재생에 대한 보조금이 유럽 재정위기의 중요한 한 가지 원인이라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신재생에 대한 지원을 과감히 감축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에너지에 대한 큰 흐름의 변화 아래에서 에너지 정책의 초점이 비전통에너지로 옮겨가고 있다. 비전통에너지의 대표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쉐일가스이다. 쉐일가스 매장량과 생산의 증대 및 석유나 석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등 천연가스는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LNG 매매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계약담당자들이 계약 체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쟁점들을 사전에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에 유리한 LNG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작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주제어 : 액화천연가스, 도입계약, 인수 또는 지불약정, 단기 매매계약, 셰일가스, 목적지(목적항) 조항, 공급원, 확정 매장량

I. 머리말

지난해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에 대한 국제적 시각은 물론 국내적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화석연료가 온실가스 배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기준, 전체 배출량의 약 65%를 차지하며, 세계에너지기구의 2011년 예측에 따르면 2035년에는 약 72%로 더욱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런 화석연료의 환경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추진되어 온 것이 원자력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인데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의심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기에 이른 것이다. 에너지원의 수입의존도가 97%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원자력발전을 급격하게 포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적 선택이겠지만, 그렇다고 원자력발전에 의존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한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변화와 신재생에 대한 보조금에 따르는 재정부담의 완화를 위해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신재생에 대한 보조금을 전격적으로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새롭게 각광받는 에너지원이 천연가스이다. 센일가스의 개발로 인해 천연가스의 매장량과 생산량이 북미를 중심으로 급격히 늘고 있고, 석유나 석탄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어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천연가스 특히 액화천연가스(Liquified Natural Gas)¹⁾의 도입계약을 법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LNG 도입계약의 체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 이하, 'LNG'라 한다.

II. LNG 도입계약의 개념과 특징

1. LNG 도입계약²⁾의 개념

LNG도 다른 물건의 매매계약과 같은 종류의 매매계약이다. 다만, 그 목적물이 LNG이며 그 목적물의 특수성으로 인해 특수한 조항들이 포함된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또한 통상의 매매계약에서와 같이 생산자와 구매자 중 어느 당사자의 협상력이 더 강한가에 따라 계약의 조건들이 결정된다.³⁾

도입계약서에 나타나는 정의에 따르면, '매도인은 도입계약에 따른 양과 가격에 LNG를 판매하고 적절한 인도지점까지 LNG를 운송하며, 구매자는 이를 구매, 인수 그리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되 비록 구매자가 LNG를 인수하지 않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것'에⁴⁾ 대한 합의를⁵⁾ 도입계약이라 하고 있다. 따라서 LNG 도입계약은 '매도인이 LNG라는 목적물을 매도하고,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는 유상·쌍무계약'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단순화된 개념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LNG 도입계약은 상당한 특수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LNG를 수입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오고 있기 때문에 국제계약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과 위에서 설

- 2) '도입계약'보다는 '매매계약'이라는 표현이 법적인 표현이다. 하지만, 해외에서 수입해온다는 측면에서 도입이라는 표현을 실무에서 사용해오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 3) 류권홍, "김보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액화천연가스(LNG) 시장의 변화와 도입계약에 미치는 영향", 「원광법학」 제25권 제4호, 원광대 법학연구소, 2009. 12., 147면.
- 4) 이런 내용의 조항을 인수 또는 지급(Take or Pay) 조항이라 한다. 이하, 'TOP'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뒤에서 다시 살펴본다.
- 5) 1991년 한국가스공사와 인도네시아의 페타미나(Pertamina)사와 체결된 LNG Sales and Purchase Contract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이런 방식의 정의는 AIPN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Petroleum Negotiators)의 2009년 Model Form Master LNG Sale and Purchase Agreement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 표준 계약서에 제4조 제1항은 매도인의 판매의무와 구매자의 구매의무를 정하면서 'Seller shall sell and make available, and Buyer shall purchase, take and pay for, or pay for if not taken, LNG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each Confirmation Memorandum'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명한 것처럼 LNG 자체의 매매목적물로써의 특수성 그리고 LNG 산업 자체의 특수성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나는 결과이다.

2. LNG의 물리적 특징과 산업적 특징

가. LNG의 특성⁶⁾

LNG는 섭씨 -161° 이하에서 액화된 천연가스로, 이렇게 냉각된 천연가스는 약 1/600로 부피가 줄어들게 된다. 또한 동일한 양의 물에 비해 그 무게가 약 반에 가깝게 줄어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수송과 관리에 있어서 경제성과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증대 된다⁷⁾. 가스전에서 생산된 가스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액화시설로 옮겨지는데, 액화작업은 질소, 산소, 일산화탄소, 황 및 물 등 다른 물질들을 가스로부터 제거하는 작업과 함께 진행된다. 이렇게 액화된 천연가스는 판매국으로부터 소비국의 인수시설에 수송된 후, 이를 기화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LNG와 액화석유가스(LPG)⁸⁾를 동일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성분과 화학적 성질에서 두 가스는 확연히 구분된다. LNG는 그 주성분의 80-95% 이상이 메탄인 반면, LPG는 이보다 훨씬 무거운 부탄이나 프로판이다. 또한 LNG시장과 LPG시장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며, 생산·수송·안전·시장의 참여자 등에 있어서도 상당한 부분 서로 다르다.

나. LNG 시장과 개발의 특수성⁹⁾

- 6) Phillip R. Weems, "Overview of Issues Common to Structuring, Negotiating and Documenting LNG Projects", *International Energy Law & Taxation Review*, Sweet and Maxwell, 2000, p.189.
- 7) Ernest E. Smith, John S. Dzienkowski, Own L. Anderson, Gary B. Conine, John S. Lowe, Burce M. Kramer, *International Petroleum Transaction*, Rocky Mountain Mineral Law Foundation, 2000, p.980. 류권홍, 김보영, 전계논문, 148면.
- 8) 'Liquefied Petroleum Gas'의 약자이다.
- 9) 류권홍, 김보영, 전계논문, 148-149면.

단기 또는 스팟(Spot)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는 석유와 달리, LNG와 관련해서는 이런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이보다는 특정한 가스전의 개발¹⁰⁾ 및 수송(Transportation)¹¹⁾이 시작되기 전에, 특정한 가스전에서 생산된 가스의 판매에 관한 장기 LNG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통상적이다.¹²⁾ 그리고 석유가 발견된 경우, 세계 시장에서의 유가에 대한 예전 가능성이 기술적 문제 및 매장량과 함께 고려되어 상업성이 평가되는데 반해, 천연가스는 생산된 가스의 판매처가 확보되지 않는 한 상업성에 대한 평가가 성립되기 어렵다. 대부분의 천연가스 생산이 잠재적 소비시장으로부터 멀리 존재하고,¹³⁾ LNG의 생산·액화·수송·기화·배송에 필요한 인프라 시설들이 사전에 갖추어 질 것이 요구되는 것도 LNG 시장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이다.

이런 사전 매매계약의 요구는 막대한 개발비용이 요구되는 천연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을 일으킴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이다. 1996년 카타르 라스라판(Ras Laffan)¹⁴⁾이 스스로 보증(Bond)을 제공하여 LNG 업계에서 새로운 방식의 프로젝트 금융이 시작되었지만, 금융의 형성 과정에서 대주단(Loaner)이 대출에 대한 담보로서 요구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모회사의 보증이나 다른 방식의 재정적 지원 방식이었다. 여기에 추가하여 금융의 금리 등 중요 조건을 결정하는 요소는 LNG 판매계약에서 확정된 연간 판매량·TOP(Take-or-Pay) 조항이 삽입되어 있는지 여부 및 TOP의 유연성 여부 등이다. 이런 대주단의

10) 'Upstream' 개발이라 한다. 물의 흐름에 비교할 때, 상류 부분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1) 'Transportation'은 상류부분에서 하류부분으로의 '수송'을 의미하고, 'Distribution은' 중간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운송되는 '배송'을 의미한다. 전기에서는 이를 송전망, 배전망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

12) 물론, 이런 흐름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LNG 시장에서도 스팟(Spot) 시장이 활성화되는 현상이 있다.

13) 우리나라에는 인도네시아, 카타르, 오만, 호주 등 상당히 먼 나라로부터 LNG를 수입해오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석유도 주로 중동으로부터 수입해오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생산지와 소비지의 원거리성은 미국이나 유럽을 기준으로 설명된 것이다.

14) 카타르의 'RasGas Company Limited(RasGas)'를 의미한다. 2001년 설립된 공동출자회사이며, 70%의 지분은 카타르 석유에 나머지 30%는 엑손모빌(ExxonMobil)에 각 소유되어 있다. 이 회사는 주로 LNG를 수출하며, 현재, 한국, 인디아, 이탈리아, 스페인, 대만, 벨기에 및 미국 등으로 LNG를 수출하고 있다. 2012년 5월 11일자 기준 홈페이지 <<http://www.rasgas.com/rasgas.com/>> 참조.

요구가 한편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이 가증하지만, LNG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비용¹⁵⁾ 및 위험성을 종합할 때 합리성이 인정되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이다.

한편, LNG 프로젝트의 시행과 관련하여 불가항력·수송·시설들이 위치하는 지역에서의 관계¹⁶⁾·가격·정부와의 관계·건설·금융·준거법 등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각 개발 주체들은 그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런 전체적 흐름에서 가장 핵심 요소는 금융의 가능성으로 대주단의 요구가 가장 결정적일 수밖에 없다.

III. LNG 도입계약의 주요 내용과 절차

1. LNG 도입계약의 주요 내용

LNG 도입계약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관련된 LNG 가치사슬 (Value Chain)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도입계약은 상류에서의 천연가스 개발로부터 하류에서의 천연가스 판매에까지 연결되는 고리이므로 매도인과 구매자 모두 전체적인 LNG 가치사슬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인 도입계약에 구속된다.

LNG 도입계약은 TOP 조항을 비롯하여, 품질·물량·선박·항구시설에 대한 기준 등을 전체적으로 포함하는 포괄적인 계약이다.

장기 도입계약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된 계약 형식들이 존재하게 되었으며, 특히 AIPN 등의 기관들은 '표준 포괄 LNG 도입계약(Model Form Master

- 15) LNG 생산 플랜트의 비용이 전체 LNG 생산에서 최종 소비까지 이르는 구조(이를 'LNG Chain'이라 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에 이르며, 500만 톤의 천연가스를 생산하려는 프로젝트라면 현재 톤당 약 \$600의 비용이 요구되므로 \$30억의 총 개발비용이 필요하게 된다.
- 16) 위험 시설 또는 혐오 시설이라는 이유로 상대한 반대가 존재하며, 시설의 건설 과정에서 많은 이해관계자들과의 분쟁이 발생한다.

LNG Sale and Purchase Agreement)'을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도입계약에 대한 조항들이 어느 정도 표준화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도 틀리지 않게 되었다.

2. LNG 도입계약의 형태

도입계약의 기간은 통상 단기·중기·장기로 나뉘며, 정확한 구분 기준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10년부터 20년 이상은 장기로, 10년 미만 13개월 이상을 중기로, 12개월 이하는 단기 계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¹⁷⁾

이런 장·단기의 계약 외에 근래에는 LNG 스팟거래(Spot Trade)가 급증하고 있다. 스팟거래는 시장에서의 LNG 가격 변화를 통해 수익을 취하려는 경제적 목적으로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스팟거래는 1일부터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인도 시기가 정해질 수 있고, 즉시 또는 장래인도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스팟거래에서는 장·단기 계약에서와 달리 LNG가 어디에서 생산된 것인지에 대한 공급원(Source)의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으며, LNG의 생산과 관련된 위험들을 분담해야 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스팟거래가 아래에서 보는 특정물량공급계약 방식의 가장 순수한 사례이다. 즉, 일정한 공급기일에 약정된 물량을 약정된 가격에 인도하고 인수하는 가장 단순한 LNG 도입 계약이라 할 수 있다.

LNG 도입계약은 또한 인도되어야 하는 LNG를 특정한 광구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하는 방식의 특정광구기초계약(Depletion-based Contracts)과 특정한 광구에 구속되지 않고 일정한 물량을 인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정물량 공급계약(Supply-based Contracts)로 구분할 수 있다.¹⁸⁾

17) 물론 5년 이상 30년 이하의 계약을 장기, 1년에서 5년까지의 계약을 중기로 구분하기도 한다. 다만, 단기에 대한 정의는 EIA의 정의를 따른다. 홈페이지는 2012년 5월 12일 현재, <<http://www.eia.doe.gov/oiaf/analysispaper/global/lngmarket.html>>이다. EIA에서는 12개월 이상을 모두 장기로, 그 이하를 단기로 구분하고 있다.

18) Peter Roberts, *Gas Sales and Gas Transportation Agreements: Principles and Practice*,

양자는 공급원(Source of Supply)에 대한 규정 여부, 물량에 대한 약정의 방식, 특정 생산광구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과 도입계약의 관계, 경제성 변화에 따른 계약의 종료 등에 관한 부분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표와 같다.

〈표 1〉 LNG 도입계약의 구분

구분	특정광구기초계약	특정물량기초계약
공급원 규정	공급원 규정 있음	공급원 규정 없음
물량에 대한 약정 방식	공급개시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의 생산증가기간, ¹⁹⁾ 생산고점기간, ²⁰⁾ 생산감소기간으로 ²¹⁾ 구분하여 물량이 증감됨	계약기간 동안 균일한 물량의 공급을 약정
생산광구에서의 불가항력	생산광구의 불가항력은 도입계약의 불가항력과 연동됨	생산광구의 불가항력이 도입계약의 불가항력과 연동될 필요 없음
경제성 변화로 인한 도입계약 종료	생산광구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경우 도입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함	생산광구의 경제성과 도입계약의 존속 여부는 무관한 문제임

3. 양해각서(MOU)의²²⁾ 체결

LNG 도입계약의 체결과정에서 대부분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물론 양해각서 이전에 의향서(LOI)를²³⁾ 주고받는 경우도 많다.

Thomson, 3rd ed., 2011, pp.72-78.

19) 'Ramp-up Period'라 한다.

20) 'Plateau Period'라 한다.

21) 'Depletion Period'라 한다.

22)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이다.

23) 'Letter of Intent'의 약자이다. 의향서는 당사자들이 일정한 계약 또는 합의를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이며, 당사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일 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의향서를 주고받았다 하여, 당사자들이 제3자와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없다.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강해지게 되므로 다른 제3자와의 접촉을 하지 못하게 되는 신뢰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이 점이 의향서와의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의향서나 양해각서 모두 그 내용에 따라 법적인 권리와 의무가 발생되는지 여부가 판단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해당 문서의 작성에 있어서 명칭이 무엇인가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문서의 내용에 무엇을 담았는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의향서와 양해각서와 별도로 계약이 상당히 진전된 단계에서 주요사항합의서(HOA)를²⁴⁾ 체결한다. 주요사항합의서는 아직 최종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이고 완전한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는 없으나, 최종 계약에서 쟁점이 되는 중요한 사항들을 거의 모두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완전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계약체결 과정에서의 신뢰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IV. LNG 도입계약의 내용 검토

1. 당사자(Parties)

당사자의 문제는 다른 모든 계약에서와 동일하게 LNG 도입계약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LNG 도입계약에서 필요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정의도 요구된다. 즉 수송을 담당하는 수송업자와 매도인 또는 구매자를 위해 보증을 제공하는 자가 있을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도입계약에서는 하나의 매도인과 하나의 구매자가 존재한다. 매도인은 자원보유국을 대신하여 천연가스를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국영석유회사 또는 국영가스회사인 경우와 자원보유국으로부터 개발권을²⁵⁾ 부여받은 민간회사인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24) 'Head of Agreement'의 약자이다.

또한 매도인은 생산을 시행한 회사일 수도 있고 생산을 한 회사로부터 천연 가스를 매수하여 재매각하는 판매회사 또는 중개회사일 수도 있다.

동일하게 매수인의 경우에도, 소비국으로부터 법적으로 또는 사실적으로 독점적 도입권한을 부여받은 국영석유회사 또는 국영가스회사가 매수인이 되며, 천연가스 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된 소비국에서는 민간회사가 매수인이 된다.

다자구도의 도입계약에 대해 살펴보면, 다수의 매도인들이 하나의 판매회사를 세워서 이를 통해 도입계약을 체결하는 공동판매회사 방식(Joint Venture Company Seller), 다수의 판매인들이 개별적으로 매수인과 도입계약을 체결하는 공동판매방식(Separate Sellers),²⁶⁾ 개별적 매도인들이 하나의 조합을 형성하여 매수인과 도입계약을 체결하는 조합판매방식(Joint Sellers)²⁷⁾ 그리고 매도인들 중 하나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이 대리인을 통해 도입계약을 체결하는 대리방식(Agent Sales) 등이 있다.

매수인의 경우도 매도인에서 본 것과 동일한 공동구매회사 방식·공동구매방식·조합구매방식·대리구매방식 등의 형태가 존재한다.

LNG 도입계약에서는 매매대금이 연간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의 금액에 이를 수 있다는 점, 계약기간이 장기인 경우 20년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많은 LNG 생산국이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않고 법체계 또한 완비되어 있지 못하거나 그 집행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 특수한 경우이지만 이란의 경우 미국의 경제제재에 의해 \$2,000만 이상의 투자가 제한되고 미국에 의한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²⁸⁾ 등 때문에 당사자의 신뢰성에 대

- 25) 개발권은 양허계약과 생산물분배협정 그리고 서비스제공계약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서비스제공계약에 의한 개발에서는 개발회사가 서비스제공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취득할 뿐 생산물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도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이란의 Buyback 협정 방식의 경우는 매도인이 될 수도 있다.
- 26) 다수의 매도인과 하나의 매수인 사이에 LNG의 물량, 스케줄 및 이와 관련된 통지를 원활히 하기 위해 별도의 협정을 체결한다. 이를 'Common Stream Agreement'라고 하며, 여기서는 매도인들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도입계약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들을 처리하도록 하되 매도인들의 책임은 개별적이라는 점 또한 명시적으로 밝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27) 매수인이 매도인들의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경우 조합판매방식이 사용된다.
- 28) Iran Sanction Act에 따르면, \$2,000만 이상의 에너지 분야에 투자는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그 제재는 수출입 금융 제한, 군사적 기술의 수출 허가 제한, \$1,000 이상의 대출 제한, 금융기관인 경우 미국 국채(Bonds) 등의 거래 제한, 미국 정부의 당해 회사로부터

한 사전 검토가 다른 어떤 매매계약에서보다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더불어, 기존에 LNG 시장에서 역사적으로 어떤 신뢰를 구축해오고 있는지, 기술적 능력은 충분한지 등에 대한 사전 검토도 당사자에 대한 신뢰성 판단의 중요한 요소이다.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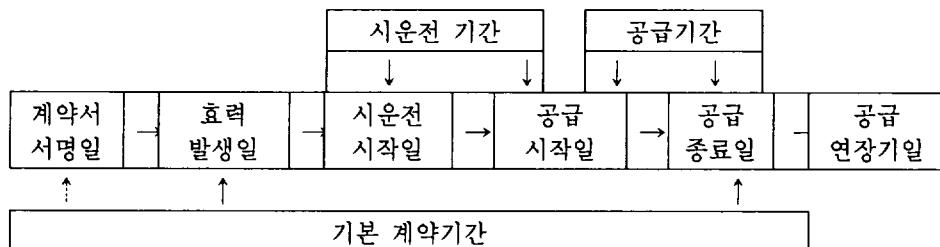
많은 경우 매도인이나 구매자들이 국영기업 또는 정부출자기관들이므로 국가에 대한 신뢰와 동일하게 판단될 것이며, 국가의 신뢰가 높은 경우 이들의 신뢰성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 국가 투명성은 LNG 자체의 개발에 대한 계약에서보다는 중요하게 검토되지 않을 것이지만, 도입계약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판단하는 보조적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³⁰⁾

형식적이지만, 당사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게 위해서는 해당국가의 법인격 취득에 관한 법률,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서면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계약기간(Term)

LNG 도입계약의 기본적인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될 수 있다.³¹⁾

〈표 2〉 LNG 도급계약에서의 계약기간



조달 금지, 수입제한 등이 있다. 이 중 2 가지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29) 만약 동절기에 LNG의 공급이 중단된다면, 국가적 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30) 이에 관한 자료는 2012년 5월 12일자 기준, 국제투명성기구 홈페이지 <<http://www.transparency.org/country>>를 참조하면 된다.

31) Peter Roberts, *ibid.*, p.109.

도입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Execution Date)로부터³²⁾ 계약의 종료일(Termination Date)까지를 기본 계약기간(Basic Term)이라고 한다.

계약이 체결되고 효력이 발생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시운전(Commissioning)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시운전을 시작한 날로부터 생산을 시작한 날까지를 시운전 기간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LNG가 공급되는 기간은 공급을 시작한 날로부터 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이다. 이를 공급기간 또는 인도기간(Delivery Period)이라 한다.

매도인의 시각에서 볼 때, 도입계약의 기본 기간 동안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는 LNG 프로젝트의 특성상 생산과 수송에 필요한 시설의 건설을 위해 빌린 자금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정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기계약을 선호할 것이다.

한편, 매수인도 LNG의 인수에 필요한 시설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시설이 운영되는 기간 동안은 안정적인 LNG의 공급을 보장받는 것은 도급계약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기본 계약기간이 당사자들에 의해 합의되는 것과 별개로 기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Extension Clause)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스전의 매장량을 정확히 추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기술의 발달과 정기 점검 등으로 인해 생산 및 수송시설의 수명이 연장되고 있으며, 시설이 노후화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잔여 매장량의 상업성이 인정된다면 새로운 시설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계약기간의 종료 전에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약서에 서명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사회의 승인 또는 정부의 승인 등 해당 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특히 선행조건(Condition Precedent)이라 한다.³³⁾ 또한 계약서 자체에 계약의 서명일로부터

32) 서명일(Signing Date)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경우, 기본계약이 이때부터 시작된다.

33) 해제조건부인지 정지조건부인지 논의가 될 수 있으나, 도입계약 자체의 효력은 발생하되 조건이 성취되지 못하는 경우 도입계약이 종료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해제조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터 일정한 기간이 도과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계약서 서명일과 효력발생일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이런 선행조건들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매도인의 경우 LNG를 인도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매수인 또한 이를 인수하거나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선행조건의 불성취가 다른 도입계약에 따른 의무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준거법 · 계약의 양도 · 비밀준수의무 · 분쟁의 해결 조항 등은 여전히 당사자를 구속한다. 즉, 선행조건의 성취와 무관하게 도입계약에 따른 기본적인 의무는 존속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선행조건이 통상적인 기간 동안 갖추어지지 않는 경우, 통지에 의해 도입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선행조건을 갖추지 못한 당사자에게 계약상 또는 계약 체결상의 책임을 지울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사안별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전형적인 선행조건들로 정부 또는 이사회 등의 승인 · 허가(Approval), 의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담보의 제공(Financing, Guaranty), 소송계약 · 재판매 계약 · 시설물이용계약 등 별도의 계약 체결 여부(Other Agreements), 항만시설 · 인수시설 · 배관망 · LNG 수송선 등 필요 시설의 완공(Facilities)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선행조건은 도입계약의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도입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필요한 조건들을 검토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공급시작일(Start Date)³⁴⁾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도입계약 자체는 계약의 서명 및 일정한 조건의 성취로 인해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현재 LNG를 생산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물량을 인수받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인도되는 일자는 그로부터 상당한 기일이 지난 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34) 또는 목표일(Target Date) 또는 최초인도일(First Delivery Date)라고도 한다.

공급시작일이 중요한 이유는 공급시작일로부터 매도인의 공급의무가 발생하며, 매수인의 인수의무와 TOP의무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공급시작일에 맞추어 LNG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공급을 하지 못하거나 물량이 부족한 경우(Shortfall) 이에 따르는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도입계약에 따라 인도목표일(Targer Date)과 앞, 위로 약 30일 정도를 당기거나 늦출 수 있는 허용기간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최초인도일은 실제로 LNG가 인도된 날 또는 매도인이 인도가 가능한 날로 확정 통지할 날이 된다.

공급시작일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문제에 대한 조항을 도입계약에 추가되어야 하며, 매도인·매수인을 불문하고 공급시작일에 인도·인수가 가능한지 문제는 각자의 영역에서 준비해야 하는 시설들의 가동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생산시설, 액화시설 또는 접안시설의 건설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매도인이 인수시설, 접안시설, 재판매에 필요한 파이프라인 등의 건설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물론 수송선은 누가 수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공급시작일과 관련된 책임 문제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공급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물량부족에서의 배상 문제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가중된 책임을 지도록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게 되는지는 협상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지적해 둔다.

4. 계약물량(Quantity)

LNG 도입계약도 일종의 매매계약이므로 목적물인 LNG의 물량이 확정되어야 한다. 다만, 도입계약은 20년이 넘는 장기간의 계약인 경우가 많고 LNG 프로젝트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연간 최소 200만 톤 이상의 물량에 대한 도입계약이 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 전체기간에 인도될 총물량, 매년 인도되어야 하는 연간약정물량, 연간약정물량에 기초하여 매월 인도되어야 하는

월간약정물량 등이 전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도입물량을 정하는 기준은 물량(量)으로³⁵⁾ 정하는 방법과 열량(熱量)으로³⁶⁾ 정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한편 물량과 열량을 전환하여 이를 모두 표현하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다.

도입물량은 해당 물량을 인도·인수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책임문제를 결정하는 기본적 기준이 되며, 연간기본약정물량을 기준으로 증가·감소물량이 결정되고, TOP의 발생 여부가 이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도입계약에서 물량과 관련해 가장 먼저 정해져야 하는 것은 도입계약의 기간 동안 인도·인수되어야 하는 총 물량인 계약물량(Contract Quantity)이다.³⁷⁾

매도인은 경제적으로 생산 가능한 천연가스의 매장량,³⁸⁾ 이미 다른 구매자들과 체결한 천연가스 매매계약을³⁹⁾ 고려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물량을 제시한다. 매수인도 시설의 규모·재판매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인수하고자 하는 물량을 결정한다.

연간계약물량(Annual Contract Quantity)란 매도인이 1년 내에 공급해야 하는 최대 물량을 의미한다. 연간계약물량은 도입계약에서 정해진 기본연간약정물량(Base Annual Contract Quantity)과 시설의 문제 등 다른 제약 요인으로 인해 기본연간약정물량을 조정한 조정연간약정물량(Adjusted Annual Contract Quantity)을 구분한다.

35) LNG 도입계약에서는 톤(Ton)을 물량의 단위로 정한다.

36) LNG 도입계약에서는 백만 영국열량단위(MMBTU)를 기준으로 한다. 'BTU'는 1평방 인치당 14.696 파운드의 절대 압력상태에서 1파운드의 증류수를 화시 59에서 60도로 가열하는데 소요되는 열량을 의미한다.

37) 장기도입계약에서는 총 계약기간 동안 공급되어야 하는 물량을 정하고 연간 단위 계약의 경우 계약물량은 의미가 없다. 이 경우 연간물량을 단순히 합한 것이 전체물량이 되기 때문이다. 기존에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광구에서 생산된 가스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광구에서 생산되고 새로운 시설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 최초공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의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몇 달에서 몇 년간은 연간공급물량이 보통의 연간물량 보다 적게 정해진다.

38) 향후 추가 개발 가능한 매장량도 고려대상이다.

39) 매도인은 LNG 및 PNG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천연가스 매매계약을 포괄해서 새로이 판매 가능한 물량을 판단하기 때문에 '천연가스 매매계약'이라고 표현한다.

장기도입계약의 경우 2백만 톤 이상의 계약물량을 기본으로 한 기본연간약정물량(Base Annual Contract Quantity)을⁴⁰⁾ 정하고 이에 대한 약간의 조정을 허용하는 조정연간약정물량(Adjusted Annual Contract Quantity)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기본연간약정물량의 규정의 예는 다음과 같다.

연간약정물량의 조정에는 매수인이 일정한 양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매수인의 추가요구가능물량(Buyer's Upward Flexibility Quantity)과 이와 반대로 감축요구가능물량(Buyer's Downward Flexibility Quantity)의 권한에 대한 규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물량의 감축권과 관련해서 지적되어야 하는 개념이 보충물량(Make Good LNG)이다. 매수인이 감축권을 행사하면 다음 해의 1월로부터 5년간⁴¹⁾ 감축된 물량을 보충할 수 있는 보충기간(Make Good Period)가 주어지는데, 이 보충기간 내에 보충권이 행사될 수 있는 물량은 감축권이 행사된 물량이다. 다만, 만약 감축된 물량이 1항차를 만재할 수 없더라도 해당 항차는 만재하도록 하는 약정이 체결되는 것이 정상적이다.

연간 도입물량은 연간 항차 계획(Cargo Shipping Schedule)과 일치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현실은 기상조건, 시설의 운용 등의 문제로 인해 해당 연도 말까지 정확하게 물량이 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상 다음 해 7일에서 10일 이내에 인수하는 물량까지 포함하여 연간 실제 인도물량을 산정한다.

또한 연도 말, 마지막 항차의 물량이 연간약정물량 또는 약정열량에 맞게 만재 가능한 경우가 현실적으로 드물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필요도 있다. 연간약정물량을 맞추기 위해 만재상태가 아닌 항차를 운영하는 것은 비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지막 항차에서는 잔존 인수물량이 얼마인지 묻지 않고 만재를 요청할 수 있는 추가만재요구물량(Additional Round-up Quantity) 또는 정반대로 만재가 불가능한 마지막 항차를 연간약정물량에서 제외하는 항차감축물량(Round-down Quantity)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

40) 간단히 'ACQ'라 한다.

41) 물론 이 기간은 예시에 불과하며,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그 외에 여러 가지의 물량 조정사유(Adjustments)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인도되지 않은 물량(Non-Delivered Gas), 불가항력 사유로 인도·인수되지 못한 물량(Force Majeure Relief), 전년도에 매수인이 약정물량을 초과 인수하여 다음해의 인수물량이 감축하게 된 물량(Carry Forward)⁴²⁾ 등을 들 수 있다.

5. 인도지점과 인도(Delivery Point and Delivery)

인도지점은 LNG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지점을 의미한다. 또한 이 지점을 기준으로 LNG의 물적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도입계약에서 어느 지점을 인도지점으로 할 것인지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물론 많은 경우 생산국의 선적항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LNG 도입계약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인도지점은 FOB와 DES이다. 권리의 이전과 위험의 이전 기준이 되는 지점에 관하여, FOB⁴³⁾ 계약에서는 선적항의 인도지점에서 인도되는 시점을 그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DES⁴⁴⁾ 계약에서는 목적항의 인도지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FOB 조건 계약의 경우 수송선을 제공할 의무가 구매자에게 있는 반면, DES 조건 계약의 경우 매도인이 수송선을 제공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 LNG 도입에서는 DES 방식을 택하였으나, 국내 해운 산업 발전 특히 고부가가치LNG 선박 조선 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FOB 조건으로 변경했으며 이 정책은 가장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FOB를 조건으로 하는 도입계약에서의 권리이전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Transfer of Title

The LNG to be sold by the Seller and purchased by Buyer hereunder shall be delivered to Buyer at the Delivery Point in the Loading Port.

42) 'Carry Forward'에 관한 규정이 도입계약에 존재하는 경우 인정될 수 있는 사항이다.

43) 'Free on Board' 조건의 계약을 의미한다.

44) 'Delivered Ex Ship' 조건의 계약을 의미한다.

Deliver of LNG shall be deemed completed, and title to and risk of loss of such LNG shall pass from Seller to Buyer, as the LNG passes the Delivery Point.

수송의무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르는데, 통상 FOB의 경우는 구매자가 DES의 경우는 매도인의 의무이다. 한편, 석유협상가협회(AIPN)의 2009년 표준 LNG 도입계약서에서는 매도인의 운송책임에 대한 조항을 정하고 있다.

Transportation by Seller

Seller shall provide or procure, at its expense, transportation from the Loading Port to the Unloading Port of the LNG Cargoes sold and made available pursuant to each Confirmation Memorandum.

수송에 필요한 필수 설비는 매도인의 시설로 선적 시설>Loading Facility), 구매자의 시설로 하역 시설(Unloading Facility), 그리고 LNG 선박 등이다. 선적 및 하역 시설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LNG 수송용 선박의 접안·선적·회항 등에 필요한 정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TOP(Take-or-Pay)

물량 및 대금지급에 관한 조항 중 TOP는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TOP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사용되는 하나의 특수기법이며, 프로젝트 생산물 또는 서비스의 구매자에게 그 물건 또는 서비스의 수령 여부를 묻지 않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다.⁴⁵⁾ 이와 유사한 약정으로는 제공-인수의무 약정(Take-if-Offered)이 있으나, 제공-인수의무 약정은 제공된 물건이나 서비스를 무조건 인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데 반해, TOP에서는 인수의무를 면하는 대신 대금을 지급

45) John D. Finnerty, *Project Financing*, Wiley, 1996, p.59.

해야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LNG 도입계약이 TOP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대주단(Lenders)이 그들의 금융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결과이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생산지 가격통제 정책의 실패 이후 1978년부터 시장자유화를 추진했는데, 기존의 장기매매계약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TOP 조항의 적법성에 대한 다툼이 많이 발생하였다. 그 대표적인 판례인 연방항소법원 Universal Resources Corporation v Panhandle Eastern Pipeline Company 813 F.2d 77 사건이며, 여기서 법원은 'TOP의 목적은 천연가스의 생산과 판매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적절하게 분담하기 위한 것이며, TOP는 매도인이 생산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매수인은 해당 생산시설에서 생산되는 일정한 양의⁴⁶⁾ 천연가스를 인수하거나 또는 인수하지 못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TOP 조항은 모호하지도 않고, 천연가스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집행력이 완전하게 인정된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TOP 조항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며, 해당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집행가능성이 인정되는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TOP 조항은 '만약 구매자가 해당 연도의 조정된 약정물량 보다 적은 양의 LNG를 인수하고 그 물량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다면, 구매자는 조정된 연간물량과 실제 인수한 물량의 차이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한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TOP 약정에 의해 인수는 되지 않았으나 대금은 지급한 물량은 메이크업(Make-Up) LNG라 하여 향후 약정 기간 내에 구매자가 인수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전체 계약 기간 내에 이를 행사해야 한다는 점, 매도인에게 메이크업 물량에 해당하는 생산 능력을 확보할 의무가 추가적으로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 등의 제한이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TOP에서의 중요한 쟁점은 TOP 물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와 조정물량의 범위 등에 관한 것이다.

46) 'Minimum Quantity'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약정된 물량으로 해석한다.

우선 TOP 물량을 연간약정물량의 일정비율로 정하는 방법이 있으며, 해당 비율도 계약기간 전체를 통해서 일정한 경우와 초기에는 증가한 후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다가 종기에는 다시 감소되도록 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일정한 비율을 정하지 않고 연간약정물량의 증가와 감소사유를 정한 다음 해당 사유들이 모두 적용된 최종 산정물량을 TOP 물량으로 정할 수도 있다. 이는 위의 물량에 대한 설명에서 본 조정연간약정물량을 의미한다.

7. 품질조항(Quality)

인도지점에서 요구되는 LNG의 품질은 도입계약에서 또 다른 주요 쟁점 사안이다. 예를 들어, 요구되는 열량을 층족하지 못한다면 매도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이로 인해 매수인은 해당 LNG를 인수하여 재판매할 때 재매수인이 요구하는 열량기준을 맞출 수 없게 되는 연쇄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도입계약에서 열량을 비롯한 품질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품질조항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화학적 성분(Chemicals) : 도입계약에는 LNG에 포함될 수 있는 불순물들의 최대허용량이 정해진다. 불순물로는 일산화탄소, 황, 산소, 물, 질소 등을 들 수 있다. 불순물은 아니지만 부탄이나 펜탄 등 다른 종류의 탄화수소에 대한 허용치도 정한다. 또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메탄비율을 규정한다.

- 열량(Calorific Value) : 요구되는 최소열량을 총량(Gross) 또는 순열량(Net) 단위로 규정한다. 또한 엄격하게 균일한 열량을 맞추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최고와 최저의 일정한 허용범위를 인정한다.

도입계약에 약정된 품질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인수를 거절하거나(Refusal to Take Delivery)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수하더라도 알았느냐(Knowingly Taking Delivery) 알지 못했느냐에(Unknowingly Taking Delivery) 따라 매도인과의 책임문제가 구분되어 논의된다.

품질기준에 약간 모자라는 상황이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인수를 요구할 것이며 매수인은 이를 인수해야 한다. 하지만 품질기준에 현격하게 맞지 않는

경우라면 매수인은 해당 LNG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질 수 있다. 이 때 매수인이 인수를 거부한 물량은 약정물량에서 제외되어 TOP 등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매수인이 품질의 하자를 알고도 인수한 때에는 이미 인수한 물량에 관하여 매도인에 대한 보상청구를 별도로 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려우며, 다만 품질이 떨어진 부분에 대한 대금감액, 추가물량의 요구 또는 하자 있는 LNG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매수인이 품질의 하자를 알지 못하고 인수하는 사례는 매도인이 설치한 검측장치에 이상이 발생하여 LNG의 품질을 제대로 판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인도 되었을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물론 LNG의 경우 매수인 측에서 검측을 시행하므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이 때 매수인은 품질에 하자가 있는 물량을 매도인이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고, 하자 있는 물량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별도로 하자 있는 물량으로 인해 발생된 파생적 손실이나 손해에⁴⁷⁾ 대한 보전을 요구 할 수 있다.

8. 대금청구와 지불(Invoicing and Payment)

도입계약은 대금청구와 대금지급에 대한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LNG 도입계약에서 특징적인 것은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인수한 물량 뿐 아니라, 위에서 본 것처럼 TOP 물량에 대해서 이를 인수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해당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이다.

대금청구와 지불조항에서는 대금청구의 절차, 대금지급의 기준 화폐, 지급기일, 분쟁이 있는 대금청구에 대한 처리절차, 분쟁이 있는 대금청구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 대금 미지급 등의 경우 매도인의 권리 등에 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목적항인도조건부(DES)⁴⁸⁾ 도입계약에서는 LNG 선박이 하역항(Unloading

47) 품질기준에 맞지 않아 발생하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 과다한 황의 포함으로 인해 폭발한 경우 인명사고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Port)에서 하역을 마친 후에 매도인이 대금청구서를 발행하는 반면, 본선인도 조건부(FOB)⁴⁹⁾ 도입계약에서는 선적항>Loading Port)에서 선적을 마친 후에 대금청구서를 발행한다. 목적항인도조건부 거래에서는 매도인이 목적물이 목적항에 도착하여 인도될 때까지는 목적물이 이전된 것이 아닌 반면, 본선인도 조건부 거래의 경우 목적물이 선적항의 선측 난간을 통과하는 순간 매수인에게 인도되는 것으로 보므로 대금청구서의 발생시점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본선인도조건부 도입계약을 기준으로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를 예로 들면, 대금청구서에는 선적된 양에 대한 총열량을 기준으로 여기에 지난 3개월의 유가를 반영한 추정가격에 따른 제1차 대금청구서에 기재하여 발행한 후, 추정가격과 실재가격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차액에 대한 제2차 대금청구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해당 연도 말에 기준유가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로 이해 이를 반영한 최종 대금청구서를 발행한다. 물론 이런 조정이 없는 경우 제2차 대금청구서가 최종대금청구서로 간주된다. 이렇게 여러 단계의 대금청구가 요구되는 것은 유가의 변동에 따른 LNG 대금의 변화가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대금청구가 있은 후, 제1차 대금청구에 대해서는 청구서 수령일 이후로 통상 8 영업일의 기간 내에, 제2차 대금청구에 대해서는 청구서 수령일 다음날로부터 20 영업일 이내에 매수인은 각 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지급화폐는 대부분 US \$를 선호하고 있다. 지급화폐의 종류는 생산에 필요한 자금의 상환과 관련된다. 만약 매도인이 취득하는 화폐가 자금의 상환을 위해 필요한 화폐와 다르다면 경우에 따라 심각한 환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

-
- 48) 'Delivered Ex Ship'의 약자이다. 착선인도조건으로도 불리며, 본선이 계약서에 정해진 시기 에 지정 목적항의 하역장소에 도착한 후 매도인이 본선 상에서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이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건이다. 한편, Incoterms 2010에서는 DES조건이 폐지되고 DAT(Delivered at Terminal) 또는 DAP(Delivered at Place)조건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주된 내용은 차이가 없다.
- 49) 'Free on Board'의 약자이며, 매도인은 목적물을 선적항에서 본선에 선적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며, 해당 시점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거래조건이다. 통상 선측난간(Ship's Rail)을 통과할 때 매도인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해석한다. 그 이후의 물건에 대한 일체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된다.

으므로 매매대금의 지급에서의 화폐와 생산시설에 관한 프로젝트 금융에서 사용되는 화폐를 일치시키는 것이 그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 외에도 매수인이 대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와 인도·인수된 물량에 대해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LNG 도입계약에서는 매수인의 지급불이행(Default)에 대비한 이행담보 등을 규정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다. 그것은 매수인들이 대부분 국영기업들이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는 매수인의 입장에서도 막대하기 때문에 대금지급을 연체하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하지만 매도인으로서는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NG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대금지급이 되지 않은 물량만큼의 인도거부,⁵⁰⁾ 미지급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계약해지권한 등을 포함한 안전장치를 둘 수 있다.

인도·인수된 물량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우선 매도인이 통지한 잠정적 대금청구서에 따라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한 다음 추후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결정된 물량에 대한 금액을 정산하는 방식·분쟁이 있는 물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자에게 지급하고 물량에 대한 분쟁이 종료한 후 이를 다시 정산하는 방식이 있다.

9. 인도계획(Scheduling)⁵¹⁾

매도인은 매수인이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물량을 인수하려는지 알아야 해당 요구에 맞추어 생산시설을 가동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LNG 공급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먼저 매도인에게 언제 어느 정도의 물량을 인수할 것인지 계획을 통지(Nomination)하도록 하되, 한편 필요한

50) 인도를 거부하는 물량이 매도인의 의무불이행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51) 'Program of Deliveries'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한다.

경우 이 계획에 일정한 정도의 변경을 허락하는 유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인도계획은 1년간의 LNG 인도·인수에 관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이다. 인도계획 규정에는 기본적으로 선적과 하역의 계획(Schedule for Loading and Unloading), 수송을 담당할 LNG 선박(LNG Carriers), LNG를 인수할 하역 터미널(Receiving Terminal)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⁵²⁾

계획의 통지는 매수인이 우선 통지하는 방법과 매도인이 우선 통지하는 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매수인이 먼저 통지하는 경우는 매수인의 인수시설 및 재판매계약의 물량 등을 감안하여 매도인에게 인수하려는 물량을 통지하려는 반면, 매도인이 먼저 통지하는 경우는 매도인이 매장량 및 생산시설의 유용성 등을 고려하여 인도하려는 물량을 통지하게 된다.

국내에 도입되는 LNG에서는 매도인이 인도계획을 먼저 통지한 후, 매수인이 인수하고자 하는 물량을 매도인에게 통지한 다음 양 당사들이 다음해가 도래하기 전의 일정한 시기 내에 다음 연도의 연간공급계획(Annual Program)에 대해 합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매달 15일 이전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향후 3개월의 인도계획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90일 계획(Ninety-Day Schedule)이라 한다.

인도계획 조항은 생산시설·인수시설·LNG 선박에 대한 정기적인 유지와 감독에 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새로운 연도가 시작되기 90일 전에 다음 연도에 시행하게 될 해당 시설들에 대한 유지 및 감독 계획을 협의하여 합의하도록 하고 있다.

10. 계량과 검사(Measurement and Testing)

계량과 검사는 LNG의 양을 측정하고 품질을 분석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계량과 검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계량에 따라 측정된 물량과 품질에 따라 매수인이 지급해야 할 대금이 결정되며, 약정물량 공급의 실패 또는 품질미달로 인해 매도인의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52) 이 중 LNG 선박과 선적 터미널 및 하역 터미널에 대한 기준을 별도의 규정에 정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이 부분은 매우 기술적인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되기 때문이다.

이런 계량과 검사에 관한 규정은 물량의 계량에 관한 절차·열량을 포함하여 약정된 품질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절차·해당 계량을 위해 필요한 기구나 계량기 등에 관한 기준 또는 설치장소에 관한 내용을 포함된다. 그 외에도 LNG 선박에 대한 검측, 계량 단위, 오차의 보정과 정확성의 검증 및 계량과 측정의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계량과 검측 규정에서 정해져야 한다.

FOB 조건의 도입계약이냐, 아니면 DES 조건의 도입계약이냐에 따라 계량에 필요한 서비스가 있어야 하는 장소가 결정된다. FOB에서는 매도인측 선적항의 선측 난간을 통과하는 순간 소유권과 위험이 이전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선적항에 계량과 검사에 필요한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물론, DES 조건의 도입계약에서는 이와 반대로 매수인의 하역항에 해당 시설들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11. 불가항력(Force Majeure)

계약의 체결 당시에 당사자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대표적 방법이 불가항력이며, 불가항력 상황이란 계약체결 당시 당사자가 예측 불가능하고 회피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한다. 그리고 불가항력 상황은 당사자에 의한 통제가 불가능해야 하며,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된 것이 아니라야 한다.

현실적으로 불가항력 조항을 세심하고 일관되게 규정하지 않아 불일치나 모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LNG 도입계약은 생산·액화·수송·기화·배관을 통한 수송·판매의 복잡한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어느 특정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은 다른 모든 단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생산단계에서는 불가항력 사유이지만 수송단계에서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생산단계에서 발생한 불가항력 사유로 수송단계에서는 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불가항력의 범위를 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상당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매수인은 안정적인 LNG의 인수를 원하는 반면, 매도인은 생산시설 또는 액화시설에 발생하는 불가항력 사유를 넓혀서 물량의 미인도 또는 부족물량의 인도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을 면하려 할 것이고, 반대로 매수인은 재판매의 불가를 불가항력 사유로 추가하여 이로 인한 TOP 책임을 면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불가항력의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들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도입계약에서의 불가항력 조항은 불가항력의 정의 · 불가항력 사유가 해당 사유로 인해 의무의 이행이 곤란하게 된 당사자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지 여부 · 불가항력 사유발생에 대한 통지 및 사후조치 · 불가항력 사유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어야 한다.

12.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와 배상(Default and Remedies)

LNG 도입계약도 일종의 매매계약이므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도입계약에 정한 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때로는 배상을 해야 한다는 점은 다를 바가 없다. 매도인에게는 약정된 물량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하는데 이를 다하지 못하거나, LNG가 약정한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채무불이행 사유이며, 매수인에게는 매도인이 약정된 물량을 인수하지 못하거나 수령한 LNG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 대표적인 채무불이행 사유이다.

다만 LNG 도입계약에 채무불이행에 대해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는 반면, 이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물론,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면 준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명시적 규정을 두더라도 배상의 범위를 직접손해에 제한하는 예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런 경우 간접손해(Consequential Damage or Loss)는 배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손해가 직접손해이고 어떤 손해는 직접 손해인지를 구분한다는 것이 아주 어렵고 재판지와 법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준거법과 중재 또는 재판지의 선정에서 특히 주의를 기울여

야 할 필요가 있다.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제외하고 있는 배상에 관한 규정의 예는 다음과 같다.

Liabilities

1.1 Consequential Loss and Damage

Each Party shall be liable for all foreseeable losses and damages arising from its breach of this Agreement and suffered by the other Party as a result of thereof; provided, however, that neither Party shall be liable to the other Party for any consequential loss of damage, howsoever the same may arise.

13. 목적항 조항(Destination Clause)

목적항은 LNG 선박이 LNG의 하역항으로 지정된 도입계약상의 특정 항구를 의미하며, LNG의 소유권과 이에 대한 위험의 이전 기준이 되는 인도지점(Delivery Point)와 다른 개념이다. 목적항은 '하역항(Unloading Port)'로도 표현되고 있다.

이런 목적항 조항을 명시하는 이유는 당해 목적항의 시설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LNG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음을 확인하려는 목적과 목적항 이외의 곳에서 LNG를 하역한다는 의미는 매수인이 당해 물량을 다른 곳에 재판매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매수인의 재판매행위를 금지하려는 취지에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LNG 선박은 해당 프로젝트들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다른 곳으로 돌려서 운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위험하고 어렵다는 점도 고려된 것이다.

이런 목적항 조항의 단점은 구매자의 입장에서 당장 불필요한 LNG 또는 저장시설의 여유가 없는 경우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매도인나 대주단은 이런 구매자의 행위를 방지해야 여유 LNG를 매도인이 직접 제3자에게 고가에 판매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된 결론이다. 이러한 이해

관계 때문에 LNG 도입계약에서 목적항 조항을 존치시킬 것인가 아니면 삭제할 것인가는 중요한 쟁점이 된다.

대표적인 목적항 조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Unloading Port

The port in _____ Japan and such other Unloading Port in Japan as agreed to between Seller and Buyer where a Receiving Facilities is located.

14. 가격결정

LNG 가격은 4개의 지역시장에 따라 결정방식이 다르다. LNG는 북미, 영국, 유럽 대륙 그리고 북동 아시아로 구분되어 별개의 시장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북미와 영국에서는 이미 가스시장이 자유화되어 가스가 하나의 일반적인 상품(Commodity)으로 인식되며 거래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Henry Hub 가⁵³⁾ 영국에서는 National Balancing Point(NBR)이 가격결정의 중요한 지점이다.

반면 유럽 대륙과 북동 아시아 시장에서는 경쟁적 가스시장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아서 물품으로서의 가스간 경쟁(Commodity Gas-to-Gas Competition)보다는 계약 단위의 경쟁(Contract Gas-to-Gas Competition) 형태를 띠고 있다.

특히 1973년 유가 파동 이후 동북아시아 시장의 LNG 가격은 일본이 선택한 결정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당시 일본은 주로 발전용 연료로 사용되던 석유를⁵⁴⁾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LNG를 도입했기 때문에 원유와 연동되는 가격 결정방식을 택하게 되었다. 이 방식에서의 핵심적인 특징은 석유 1배럴과 동등한 열량의 LNG를 의미하는 원유등가계수와 엄격한 원유등가관계를 완화하기 위한 조정상수의 결정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의 LNG의 가격 결정방식을 역사적으로 구분하여 정

53) 선물거래 등에서는 뉴욕 상업거래소(New York Mercantile Exchange, NYMEX)가 기준이 된다.

54) 원유(Crude oil) 또는 중유(Heavy fuel oil)을 포함한다.

리하면, 1969년 일본이 취했던 단위 물량 당 고정가격을 정하는 방식, 1970년 대 초반 석유 파동과 더불어 발생한 석유 제품의 가격에 연동시키는 경쟁제품 가격 연계방식, 1970년대 후반 제2차 석유 파동 이후 석유수출국기구(OECD) 의 공식 유가에 연계시키는 방식 등이⁵⁵⁾ 있으며, 최근까지의 아시아 시장에서 의 주류는 S-curve 방식이었으나,⁵⁶⁾ 유가가 급등하는 등 시장상황의 변동으로 그 자취를 감추고 있다.⁵⁷⁾

1973년 유가 파동 이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이용되던 가격공식은 P (LNG)⁵⁸⁾ = AP(crude oil)+B이며, 여기서 A는 원유등가계수, B는 수송비를 포함하여 조정된 상수(常數)이며, P는 유가를 의미한다. 유가는 대부분 일본 통관세 납세 후 원유가격을 기준(JCC)⁵⁹⁾으로 한다. 다만, 유가 \$11보다 아래의 경우나 \$29 이상의 경우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고, 별도로 당사자들이 만나서 가격을 합의하도록 되어 있다.

원유등가계수는 원유 1배럴과 같은 열량의 천연가스는 5.8MMBTU이기 때문에, 1MMBTU는 약 0.1724배럴에 해당하는 열량에 해당한다. 하지만 여기에 약간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일본 LNG에서는 0.1485가 원유등가계수로 사용되고 있다.⁶⁰⁾

한편, 인도네시아가 LNG 시장에서의 주요 공급국으로 등장하면서, 기존의 일본의 계약방식과 다른 원유등가계수 및 유가를 사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LNG 계약에서의 원유등가계수는 0.1558이며, 원유가격은 인도네시아 원유의 평균가격을 의미하는 ICP(Indonesian Crude Price)가 사용된다.

55) 이외에 환경 프리미엄과 물가 상승률 등이 가격에 반영되기도 한다.

56) 더 개괄적으로는 생산비용에 일정한 이윤을 추가하는 Cost Plus 방식, 확정된 가격의 Fixed Price 방식, 시장의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Market Value 방식 등으로 구분한다. Claude Duval, Honoré Le Leuch, André Pertuzio, Jacqueline Lang Weaver, *International Petroleum Exploration and Exploration Agreements*, Barrows, 2009, p.187.

57) S-curve 방식은 일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국제원유가격이 변동할 것이며, 이 범위 밖의 상황은 일시적 현상일 것이라는 전제하에 형성된 방식이므로, 국제원유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현상이 지속되는 경우(Out-of-Range Position) 매도인으로서는 이를 새로운 시장상황으로 보아 변경하려 하기 때문이다.

58) MMBTU 즉 백만 BTU 당 가격을 의미한다.

59) 'Japanese Custom Cleared Crude Oil Price'의 약자이다.

60) 86%의 할인율이다.

이런 가격 결정방식이 1990년대 일본에서부터 S-curve 방식으로 전환되었는데, 그 기본 공식은 $P(\text{LNG}) = 0.1485 * \text{JCC} + \text{Constant}^{61}) + S^{62})$ 이다. 물론 계약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위 공식의 범위 내에서 상수들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S-curve 방식에서 일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는 국제유가의 변동이 LNG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는 반면, 하위 변곡점 좌측에서는 매도인이 상위 변곡점 우측이 매수인이 국제유가의 급격하고 일시적인 변동으로부터 보호된다.

15. LNG 생산구역(Source of Supply)

특정광구기초계약(Depletion-Based Contract) 형태의 LNG 도입계약은 일정한 공급구역을 특정하고, 여기서 생산되는 LNG를 구매자에게 약정기간 동안 공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매수인은 TOP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대가로 특정한 광구에서 생산되는 물량을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게 되며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도입계약에 생산구역을 정하고 있다.

특히 하나의 공급구역으로부터 생산된 LNG를 다수의 계약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⁶³⁾ 공급의 안정성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되며, 당해 공급지역의 매장량이 도입계약의 존속기간 동안 LNG를 공급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한지에 대한 부분은 구매자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이다.

따라서 공급지역에 대한 정의, 만약 매도인이 생산물분배계약(Production Sharing Agreement)⁶⁴⁾의 구성원이라면 당해 구성원으로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LNG 물량에 대한 판매권한 및 그 물량이 약정물량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정도라는 사실에 대한 확인 및 당해 공급지역에 존재하는 확정된 LNG 매

61) 조정상수를 의미한다. 이 조정상수는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 대상이며,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다.

62) 곡선의 모양이 'S'와 유사하기 때문에 주어진 이름이며, 상위와 하위의 변곡점을 정한다. 예를 들어 유가가 \$16를 하위 변곡점, \$26를 상위 변곡점으로 점으로 정하는 것이다.

63) 하나의 매도인이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여러 매도인이 각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64) 석유나, 가스의 개발권 취득의 방식으로는 양허계약(Concession), 생산물분배계약, 서비스 제공계약(Service Contract) 등이 있다.

장량(Proven Reserves)⁶⁵⁾에 대한 검증 조항 등을 명확하게 할 것이 요구된다.

16. 준거법(Applicable Law)과⁶⁶⁾ 분쟁의 해결(Disputes Settlement)

LNG 도입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이 되는 법을 준거법이라 하며, 이 준거법은 재판 또는 중재 기타 모든 분쟁해결절차에서 적용해야 하는 실체법이다. 준거법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성격 그리고 그 집행 여부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 만약 준거법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법원 또는 중재재판부가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며 그 기준은 계약의 체결지·계약의 이행지 등 해당 분쟁과의 관련성의 정도가 될 것이다.

LNG 도입계약에서는 영국의 England나 미국의 New York주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 배경에서는 금융기관들의 요구와 법 자체에 대한 신뢰 여부 등이 중요한 결정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준거법을 정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특정 국가 또는 주(州)의 실체법을 지정하지 않고 법 선택에 관한 법을⁶⁷⁾ 지정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제3국의 법이 적용되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과,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협약(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과 국제물품매매에서의 소멸시효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Limitation Period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의 적용 배제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어야 해당 협약들이 도입계약에 적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LNG 공급계약은 많은 경우 그 기간이 20년 이상의 장기계약이기 때문에 상황의 변화가 다양할 수 있고 따라서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의 발생 가능성

65)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기준에 따르면 지질학적으로 90%이상의 생산 가능성이 있는 경우 Proven Reserve라고 한다. John Mitchell, *Petroleum Reserves in Question*,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2004, p.5. 또한 Leonardo Maugeri의 저서 'The Age of Oil'에 따르면 석유 기술자 연합(Society of Petroleum Engineers)과 세계 석유 회의(World Petroleum Congress)도 이와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 제212면 참조.

66) 'Governing Law'라고도 한다.

67) 우리의 섭외사법을 의미한다.

이 크며, 분쟁의 성격이나 분쟁으로 인한 결과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적 조치를 충실히 해야 한다.

분쟁의 해결 방법으로는 공식적 해결방법과 비공식적 해결방법이 있으며, LNG 도입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깊은 상호 신뢰에 기초하기 때문에 우선 비공식적인 해결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런 비공식적 해결방식에서의 기본원칙은 우의적 해결(Amicable Settlement)이다.

대표적인 공식적 분쟁해결방식은 중재(Arbitration)과 소송(Litigation)이며,⁶⁸⁾ 많은 도입계약에서는 중재를 선호하고 있다. 다만, 기술적 성격의 분쟁에 대해서는 미국 상무성의 연방표준국(the National Bureau of Standards)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중재를 분쟁해결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 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준거법·중재지·중재에 관한 행정절차 규정·중재인의 지정·중재인의 자격·중재인의 수·중재 언어·중재 기간·비용의 부담방법·중재결정에서 사용될 화폐·중재집행 규정의 필요성·보전처분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더불어 계약의 상대방이 국가이거나, 공기업이라면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를 주장하여 분쟁해결 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권면제의 포기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안전한 조치이다. 하지만 LNG 도입계약은 상업적 성격을 띤 계약이기 때문에 주권면제를 주장하더라도 상대적 주권면제 이론에 의해 중재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PN은 주권면제의 포기조항을 둘 것을 강조하고 있다.⁶⁹⁾

V. 맷음말

LNG 도입계약은 막대한 금액과 장기간의 거래, 그리고 그 배후에 금융기관들이 계약의 전체적 틀을 지배한다는 특성을 가진 국제거래이다.

68) 조정과 알선 방식 등도 사용되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신속하며 해당 결정이 종국적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중재가 선호되고 있다.

69) 류권홍, 「국제 석유·가스개발 및 거래계약」, 한국학술정보, 2011, 309-312면.

따라서 LNG의 개발, 생산, 수송, 판매 등을 둘러싼 전체적인 흐름과 국제법·국제거래법 등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며, LNG 도입계약은 단순히 상업적 성격을 넘어 국제정치적 측면까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두고 싶다. 지금까지는 전통적 가스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이제는 셰일 가스를 비롯한 비전통적 가스의 도입에 따르는 법적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할 것이며 이에 대한 연구와 사전 대비가 요구된다.

특히 천연가스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 보이므로, 앞으로도 수송망과 관련된 법적 문제의 검토를 포함하는 천연가스의 매매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류권홍, 「국제 석유·가스개발 및 거래계약」, 한국학술정보, 2011.
- 류권홍, “김보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액화천연가스(LNG) 시장의 변화와 도입계약에 미치는 영향”, 「원광법학」 제25권 제4호, 2009.
- AIPN, *Model Form Master LNG Sale and Purchase Agreement*, 2009.
- Claude Duval, Honoré Le Leuch, André Pertuzio, Jacqueline Lang Weaver, *International Petroleum Exploration and Exploration Agreements*, Barrows, 2009.
- Ernest E. Smith, John S. Dzienkowski, Own L. Anderson, Gary B. Conine, John S. Lowe, Burce M. Kramer, *International Petroleum Transaction*, Rocky Mountain Mineral Law Foundation, 2000.
- Peter Roberts, *Gas Sales and Gas Transportation Agreements: Principles and Practice*, 3rd ed, Thomson, 2011.
- Phillip R. Weems, “Overview of Issues Common to Structuring, Negotiating and Documenting LNG Projects”, *International Energy Law &*

Taxation Review,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2000.

[Abstract]

Legal Analysis of LNG Sale & Purchase Agreement

Ryu, Kwon-Hong

Professor, Law School, Wonkwang Univ.

LNG Sale & Purchase Contract is an international trade with the nature of huge amount of contract price, long term over 20 years, and the unique financial structure.

In order to understand LNG trade, it is required to know the flow of LNG from exploration, production, transportation, distribution, marketing and to have the knowledge on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Trade Law. Further, LNG trade should be understood with recognizing not only the commercial character but also the influences of geopolitical circumstances.

The environmental problems of fossil fuel including CO₂ emission has been the cause of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and nuclear energy. However, after the Fukushima accident in 2011 the big picture on the safety of unclear has been changed dramatically.

While it might be difficult for Korea which is importing over 97% of energy sources to give up unclear generation policy abruptly, to keep its nuclear policy going on will be harder as well.

There has been the change of public perception on renewable which has its own limits and subsidies for Renewable became the issue as one of the main reason for budget deficit in EU countries, especially in Spain. Spain government announced that the support for renewable energy should be cut.

Under the big change of trend in energy as said above, the focus of energy policy is moving to the unconventional energy sources. The representative one is shale gas. The reasons are the reserve and production of shale gas have been increased in the world and natural gas has strong competitiveness with low emission of CO₂ compared to oil or coal.

In this article, the legal nature of LNG Sale & Purchase will be dealt in depth. With this, the contractors will understand what will be the main legal issues in dealing. Consequently, it will help to finalize the contract with favor of our country.

Key words : LNG, Sale & Purchase Agreement, Take or Pay, Spot Contract, Shale Gas, Destination Clause, Source of Supply, Proven Reserves